

[10]월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산업위생기사

사업장명: (주)코넥스

* 상태보고서는 사업주(관리책임자)가 선람하여 내부결재 후 신속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결				
재				

1. 보건관리상태

방문일자: 2025-10-28

사업자 현황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비제조업				
	업종분류: 제강업				
근로자현황	총 근로자수 : 161명			입사자수	퇴사자수
전 월	163명 사무직: 남 6명 / 여 2명 사무직 외: 남 155명 / 여 0명			0명	0명
당 월	161명 사무직: 남 6명 / 여 2명 사무직 외: 남 153명 / 여 0명			0명	0명
산업재해 발생현황	총 재해자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업무상질병 재해	재해율(%)
전 월	0명	0명	0명	0명	0
당 월	0명	0명	0명	0명	0
연누적현황	0명	0명	0명	0명	0

2. 업무수행내용

◎ 사업장 관리

업무수행내용	점검결과 (보건관리상태)				지도내용(개선 의견)
	개 선	진 행	미 개 선	미 해 당	
안전·보건체제 관리		○			★ 안전보건규정 2025.05.19 제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상태보고서에 자필 서명하고 지도사항의 개선결과를 확인하고록 지도 2.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안전보건방침, 목표를 게시하도록 지도 3. 위험성평가의 정기적 실시, 위험요인 개선 및 현장근로자 참여지도 4. 근로자에게 현장의 주요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한 작업방법을 주지하도록 지도 5. 경영책임자가 매년 안전보건활동 실적을 검토하고 지속개선하도록 지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실시일: 2/4분기(25.06.) - 실시일: 3/4분기(25.09.)

◎ 공정 및 물질 관리

업무수행내용	점검결과 (보건관리상태)				지도내용(개선 의견)
	개 선	진 행	미 개 선	미 해 당	
보호구 관리		○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 보호구 검정확인 서류 확인 및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중 - 지급중인 보호구 종류: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등

◎ 작업환경 관리

업무수행내용	점검결과 (보건관리상태)				지도내용(개선 의견)
	개 선	진 행	미 개 선	미 해 당	
작업환경측정 관리		○			■ 25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 측정일정 : 25.09.23~24 (2일간) - 실시기관 : 포스코/대한보건환경연구소(주) - 측정결과 : 전공정 노출기준 미만
근골격계질환 관리		○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 안내 유해요인조사 실시예정: 25.11.
위험성평가		○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 : 25.05.01~11월말까지 실시예정

◎ 건강관리

업무수행내용	점검결과 (보건관리상태)				지도내용(개선 의견)
	개 선	진 행	미 개 선	미 해 당	

건강진단 관리		○		■ 근로자건강검진 진행 확인 및 후속 안내 ▷ 하반기 특수건강검진(벤젠)에 대해 검진기관(세명기독병원)과 협의하여 4분기(11월 실시예정)내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12대 안전수칙 관련사항 ('7.23 시행) ▷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폭염 분야 12대 핵심안전수칙 점검 안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상태보고서에 자필 서명하고 지도사항의 개선결과를 확인하고록 지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도·감독)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제출한 상태보고서를 검토하고 싸인하였는가?

(☒ 개선 완료 ☐ 미흡)

보고서 서명관련사항 재안내

+보고서에 기재된 개선 사항이 실제 현장에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지도드립니다.

+지정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개선 결과를 다시 점검하도록 안내드립니다.

2.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안전보건방침·목표를 게시하도록 지도

25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배포

- 사무실, 휴게실 및 안전보건게시판에 게시중

> 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게시판, 근로자 휴게공간 등)에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를 게시되었는가?

(☒ 게시 확인 ☐ 미부착)

+게시물 내용이 최신이며,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점검함.

3. 위험성평가의 정기적 실시, 위험요인 개선 및 현장근로자 참여지도

> 정기 위험성평가 25.11월 진행예정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확인된 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를 현장 근로자가 참여하여 수행하도록 지도함.

+위험성 평가 결과와 개선 사항을 기록하고, 현장 근로자에게 공유하여 안전 참여를 활성화함.

4. 근로자에게 현장의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한 작업방법을 주지하도록 지도

> 안전보건 교육 OR 채용시교육에 현장에 대한 유해요인, 취급유해인자 등을 교육한 내용이 있는가?

(☒ 교육 실시 ☐ 미흡)

+근로자에게 현장의 주요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 작업 방법을 주지시키도록 지도함.

+안전작업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반복 지도함.

5. 경영책임자가 매년 안전보건활동 실적을 검토하고 지속개선하도록 지도

경영책임자가 매년 안전보건활동 실적을 검토하도록 지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드립니다.

활동 결과와 개선 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함을 지도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실시일: 2/4분기(25.06.)

- 실시일: 3/4분기(25.09.)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시 보건관리자(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당연직 위원으로서 회의에 반드시 출석하도록 요청하시고 만일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인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지속바랍니다. 심의·의결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하시고 사내보, 게시 또는 정례조회 등에 의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후속관리 지속바랍니다.

■ 25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 측정일정: 25.09.23~24 (2일간)

- 실시기관: 포스코/대한보건환경연구소(주)

- 측정결과: 전공정 노출기준 미만

- 작업환경측정기관과 협의하여 누락되는 공정 및 유해인자(물질안전보건자료 포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는 5년간(특별관리물질 있을시 30년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게시판, 사보, 조회 및 교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참조하여 해당공정내 특수검진대상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일정한 주기에 따라 배치전, 후 건강검진 및 정기적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제656조]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작업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유해요인조사 실시예정일: 11월 예정

▷ 통지 및 사후조치 (제660조)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유해성 주지 (제661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성을 주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제662조)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관리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 중량의 표시 등 (제665조)

사업주는 5kg 이상의 물품을 들거나 내리는 장소에는 해당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 작업자세 등 (제666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때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작업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

치를 취해야 합니다.

▷ 근골격계질환예방 주요 작업 안전 수칙

- 작업 전후 스트레칭 실시, 물품 중량 및 무게중심 표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등 교육, 올바른 중량물 취급자세 교육, 중량물 이동대차 이용, 상자 손잡이 등 보조도구 설치,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의자 제공, 정기적 휴식시간 제공, 유해요인 조사 및 작업 환경 개선

- 올바른 중량물 취급자세: 중량물의 무게중심 확인-가까이 서기-쫓그리고 앉아 물체를 몸에 밀착시켜 안정되게 잡기-허리를 펴고 무릎은 구부린채로 다리 힘으로 들어올리기

- 잘못된 자세: 허리를 구부린채로 중량물 들어올리기-물체를 들고 불안정한 상태로 이동

- 요통재해와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질환 관리 자료를 제공함에 따라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현장 지도 바랍니다.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바랍니다.

■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 25.05.01~ 25.11.30까지 실시예정

▷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파악 시 공정에 따른 관리대상물질(특별관리물질) 취급, 산업재해현황, 아차사고,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직업병 유소견자 포함), 뇌심혈관계 근로자현황, 근골격계부담작업, 밀폐공간 보유, 직무스트레스 등의 관련법규(코샤가이드) 등을 수집·파악하여 사업장 정기 위험성평가시 작업환경측정결과와 공정 및 유해물질에 대한 화학물질위험성평가를 위험성평가표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에 기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 "아차사고"라 한다)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내용은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감소대책 수립 시행으로 동일 유형의 재해 예방 바랍니다.

▷ 유해위험요인(취급물질 등 유해인자) 파악 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 시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 의견 청취, 아차사고 및 산업재해 사례,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결과, 안전보건관계서류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유중인 모든 취급물질(화학물질) 및 작업자의 작업방법 등에서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 추정 및 결정 방식 채택하시기 바랍니다.(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제시)

- 사업장의 규모, 근로자 수, 대상 공정 및 화학물질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기술법, 빈도·강도법 등)

※ 빈도 강도법: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곱셈, 덧셈, 행렬 등으로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고, 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

※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빨강.노랑.초록 등과 같이 3단계의 등급으로 간략하게 구분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

※ 체크리스트(Checklist)법: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 목록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

※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위험성 수준이 높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

※ 그 외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방법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 수 분석(FTA)

아. 사건 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 허용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여부

-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중 사전준비 단계에서 작성되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서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기준을 설정하고, 도출된 유해위험요인별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개선계획을 수립·시행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및 근로자 참여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정하는 절차, 시기에 따라 실시하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모든 절차에 참여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절차: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 기록 및 보존 시 포함사항 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실시 시기별 위험성 평가 완료한 날부터 3년간 보존(중처법 대비 5년 보유 권고)

▷ 2025년도 위험성 평가 실시 완료 후 위 실시 지도사항에 대하여 확인 예정입니다.

■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12대 안전수칙 관련사항 ('7.23 시행)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핵심인 12대 안전수칙은 산업재해 중 가장 빈번한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와 폭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선정)되었습니다.

※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폭염 분야 12대 핵심안전 수칙을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

ㄱ. 12대 핵심 안전수칙 요약

① 추락 방지

1.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2.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설치
3. 개구부 덮개 고정 설치

② 끼임 사고 예방

4. 방호덮개, 안전가드 등 방호장치 설치
5. 정비·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등 잠금 조치 및 안전표지 부착

③ 부딪힘 사고 방지

6. 작업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및 작업지휘자 배치
7. 근로자 안전 통로 확보 및 작업장 정리 정돈

④ 화재·폭발 예방

8. 용접 시 불티 비산 방지 철저 및 화재감시자 배치
9. 소화설비 및 가연물 관리 철저

⑤ 질식 사고 예방

10.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작업 중 충분한 환기 유지
11.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⑥ 폭염 대응

12. 5대 기본 수칙 준수: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충분한 휴식, 보냉장구 비치, 119 신고 체계 구축

▷ 12대 핵심 안전수칙은 과거 사고의 유형과 원인 등을 분석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며,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를 일으키는 12대 핵심 안전수칙 위반 적발 시에는 즉각 시정하시기 바라며, 12대 핵심 안전수칙에 대해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한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결과

- * 물질안전보건자료 - 적합
- * 질식사고 예방 - 해당없음(포스코퓨처엠-긴급구조훈련실시예정/밀폐공간프로그램실시완료)
- *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해당없음
- 점검표의 모든 항목이 대부분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 바랍니다.

* 안전분야 [안전일터 핵심 확인 활동]은 경북산업안전본부에서 9/30 확인함.

3. 종합의견 위탁업무수행(총괄)(세부업무내용 및 개선의견)

3. 종합의견 위탁업무수행(총괄)(세부업무내용 및 개선의견)

방문일자	2025-10-28	사업장 담당자	직위: 성명: 이영수	보건 관리자	자격: 성명: 김민준
------	------------	------------	----------------	-----------	----------------